

□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임.

○먼저 제1조는 시의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 육성하고,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,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열거하고 있음.

○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은 관계공무원, 관광관련기관·단체 및 업체관계자, 기타 관광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, 위원의 임기는 관계공무원의 경우 해당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였음.

그러나 위원 구성(참고자료)에서 보듯이 문화관광부의 관광기획과장은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위촉 대상이라는 점이 문제로 남게 됨. 왜냐 하면 문화관광부의 관광기획과장을 위원으로 두는 것은 국가의 관광정책과 시의 관광정책간 연계성 및 보완성을 염두에 둔 경우라 할 것인바, 위촉직이라는 이유로 임기 2년을 고수하게 되면 현재의 관광기획과장이 문화관광부의 타 보직으로 변경되더라도 위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중앙정부와 관광정책의 연계성 내지 보완성 확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.

○따라서 문화관광부의 관광기획과장은 위촉직임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전반부의 규정을 근거로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위원의 임기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○제5조는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,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토록 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제7조는 수당에 관한 규정을, 그리고 제8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.

○마지막으로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회의

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는바, 이는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없음.

7. 심사결과

원안가결(재적 16인, 재석 16인, 전원일치)

8. 소수의견 요지: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:없음.

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·육성하고,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,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.

1.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·단기 시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
3.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객 맞이 준비에 관한 사항
4.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

제3조(구성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을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
1. 관계공무원
2. 관광관련기관, 단체 및 업체 관계 인사
3. 기타 관광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

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문화관광국 관광과장이 된다.

<p>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제 4 조(위원의 임기)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이외의 위원 임기는 위촉일부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제 5 조(위원장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 6 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.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 7 조(수당 등)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·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 8 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제3조제1항중 “체육센터”를 “체육센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”로 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 운영에 관한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1. 특성체육공원</p> <p>제3조제1항중 “체육센터”를 “체육센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1년”을 각각 “3년”으로 한다.</p> <p>제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별표2의 비고1항중 “소인(13세이하)”를 “65세 이상의 자와 소인(13세이하)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3조의 제목 “(재정지원대상)”을 “(재정용자대상)”으로 하고, 동조중 “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”를 “재정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”로 한다.</p> <p>안 제9조를 제10조로, 안 제8조를 제9조로, 안 제7조를 제8조로, 안 제6조를 제7조로, 안 제5조를 제6조로, 안 제4조를 제5조로 하고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4조(재정보조대상)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</li> <li>2. 재정용자대상중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li> </ol>
--	--